**선린머니 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스마트로(이하 "운영사”라고 함)가 운영하는 선린대학교 재학생 및 직원 등 선린대학교 구성원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선린머니(이하 “선린머니”라 함)를 충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선린머니"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과 “운영사” 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회원**”이란 선린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교직원 및 협력사 직원 등 선린대학교의 포괄적 구성원으로서, 본 약관을 승인하고 “운영사”에 "선린머니" 사용을 신청하고, “운영사”로부터 “선린머니”의 사용을 허락 받아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선린머니**”란 “운영사”가 “회원”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린대학교 학생증” 또는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모바일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함)에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함)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회원”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를 말합니다.
3. “**가맹점**”이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회원”으로부터 “선린머니”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운영사”와 체결한 선린대학교 내외의 점포를 말합니다.
4. “**충전**”이란 “선린머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등을 통해 “운영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5. “**소멸시효기간**”이란 “회원”이 “선린머니”를 사용하거나 “운영사”에 대하여 기 충전된 "선린머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6. **“환급”**이란 “운영사”가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중전되어 “회원”이 보유중인 “선린머니”에 대해, “회원”의 요청에 따라 “운영사”가 해당 “선린머니”가 표창하는 금전적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선린머니"의 사용신청)**

1. “회원”은 “선린머니”의 사용을 희망할 경우, 은행의 영업점 및 온라인 계좌이체 등을 통해 “운영사”가 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 및 “충전”할 수 있으며, "선린머니"의 사용신청 자격은 “회원”으로 한정됩니다.
2. 본 약관을 통해 또는 별도로 공지한 수수료 외에 “선린머니”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3.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의 사용신청 시, “회원”에게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 명, 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모바일 상의 사용신청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제4조 ("선린머니"와 “소멸시효기간”)**

1. "선린머니"의 잔액은 충전일로부터 5년(이하 “소멸시효기간”이라 함)이 경과하면 소멸되며, 소멸된 “선린머니”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은 “운영사”의 필요시 5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사”는 “선린머니”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에게 “소멸시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소멸예정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운영사”가 “회원”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운영사”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선린머니"의 미사용 잔액을 선린대학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사”는 5만원 이상의 "선린머니"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기 1개월 전까지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등 기부 관련 결정 사항을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4. 전항에 따라 기부예정 통지를 한 “운영사”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5조 ("선린머니"의 이용)**

1. "선린머니"는 일시불 구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원”은 "선린머니"를 충전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선린머니" 사용 시, “운영사”는 해당 "선린머니"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
4. "회원”은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선린머니"로 그 대가를 지불할 경우, “가맹점”에 “선린머니”의 정보가 기록된 “학생증”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학생증"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 단가가 5만원 이하인 거래의 경우 무서명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1. “운영사”는 “선린머니”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4.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5.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6.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8.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7조 ("선린머니"의 이용 제한)**

1. "선린머니"는 “운영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은 선린대학교 내외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선린머니"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전자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운영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선린머니"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6. “선린머니”의 충전 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7. 기타 “선린머니” 기록 정보의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선린머니"가 전항에 따라 이용 정지된 경우, “운영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항 제2, 4, 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 또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해소사유발생 당일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9. “회원”은 “운영사”에 대하여 "선린머니"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또는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등을 통하여 "선린머니"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회원”은 “선린머니”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선린머니"의 지급의 효력발생 및 철회)**

1. “운영사”는 지급인 또는 수취인과 “선린머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수취인이나 수취인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지급인 또는 수취인이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선린머니” 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령한 자금을 지급인에게 반환합니다. 이 경우, 지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전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선린머니”를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기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13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선린머니"를 당일 사용한 후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당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회원”의 "선린머니"에 충전합니다.
5. 사용 당일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사”는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취소금액만큼 해당 “회원”의 “선린머니”에 충전합니다.

**제9조 ("선린머니"의 충전)**

1. "선린머니"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회에 최고 50만원입니다.
2. 운영사는 "선린머니"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선린머니"의 잔액 확인)**

"선린머니"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잔액표시 화면
2. 매출전표. 단,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제11조 ("선린머니"의 소득공제)**

“회원”이 "선린머니"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선린머니" 이용금액
2. 환불금액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한 "선린머니" 이용금액

**제12조 ("선린머니"의 환급)**

1. “회원”은 “운영사” 콜센터 및 모바일 “신분증” 내 환급신청 e-mail 등을 통해 해당 "선린머니" 잔액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별도로 정한 양식을 통해 “회원” 본인 여부와 실명 등을 확인한 후 “회원”의 환급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환급 가능합니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린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선린머니"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5. "선린머니"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6. “회원”이 “선린머니”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린머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제13조 (“선린머니” 거래내용의 확인)**

1. “운영사”는 “회원”이 소지한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을 통하여 관련법령 및 정책에 따라 “운영사”가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는 각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회원”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운영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관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5.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6.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7.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8. “운영사”가 “선린머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9.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10.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관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2.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13.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서울시 목동서로 201 24층 ㈜스마트로
2. 이메일 주소: [smartcampus@smartro.co.kr](mailto:smartcampus@smartro.co.kr)
3. 전화번호 : 02-2109-9831

**제14조 (“선린머니” 오류의 정정 등)**

1. “회원”은 “선린머니”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운영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선린머니”서비스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드립니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1. “운영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3.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4. 본 약관 제1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6.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7.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1. 본 약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2.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선린머니”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8. “운영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선린머니"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1. “회원”은 “신분증” 과 “신분증”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운영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영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선린머니” 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고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의 분실·도난 시, “선린머니”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신규 발행된 “신분증”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3. “운영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운영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 은 “운영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위ㆍ변조 “선린머니” 사용 등에 대한 책임)**

1.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린머니"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운영사”에 있습니다.
2.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3.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4. “선린머니” 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7.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선린머니”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접근매체 관련 정보(일련번호, 비밀번호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8. “운영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발생한 제1항 제3호의 사고의 경우
9.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10.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11.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1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운영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13.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운영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8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계좌정보,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변경사항의 통지)**

1.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휴대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운영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운영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20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회원”은 다음의 보호 책임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자 : 민영현 팀장 / 대표번호 : 02-2109-9831 / E-mail : [smartcampus@smartro.co.kr](mailto:smartcampus@smartro.co.kr)

1. “회원”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전화, 모사전송 또는 전자적 장치)을 통하여 “운영사”에게 사용 이력에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회원”은 “운영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운영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2조 (이용약관의 명시 및 설명)**

1. “운영사”는 “회원”이 “선린머니” 사용을 위해 “운영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약관의 내용을 “운영사”가 제공하는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 등에 게시하거나 "선린머니"의 사용 신청 또는 충전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운영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3. “운영사”는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4.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5.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3조 (이용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운영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모바일 “신분증” 내 Push 문자 서비스,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 “운영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이 전단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4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1. “운영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선린머니”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관할)**

“운영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 칙** < 2017. 07. 31. 제정>

**제1조 (경과조치)**

1. 제13조 제2항은 2017년 3월 1일 이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갱신한 “회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부 칙** < 2019. 11. 20. 전면 개정>

**제1조 (경과조치)**

본 약관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